

#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3220
------	------

2022. 6. 21.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5월 25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5월 27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】

-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2.6.16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관광체육국장 최경주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 및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,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필요사항 지원을 위해 장애인 전문체육 기관·단체에 위탁하고자 함.
- 이에 「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
- 종목 : 휠체어농구, 탁구, 휠체어컬링, 골볼, 육상, 역도, 수영, 보치아, 양궁
- 인원 : 총 45명

#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(2023.1. ~ 2025.12.)
- 위탁유형 : 사무형
- 위탁방법 : 재위탁(공모)
- 기관선정 :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시 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탁기관 선정
- 위탁업무
  -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
  - 경기인 확보 및 선수훈련, 국내·외 경기대회 출전
  -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시설·장비 관리
  - 시정홍보 및 기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사항
- 소요예산(안) : 31억 1백만원(3,100,947천원 / 2023년 기준)

### 다. 추진근거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
  -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, 제9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
-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(2022.4.20.)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 - 1차 : 2010.3.~2012.12. (2년 10개월), 서울시장애인체육회
  - 2차 : 2013.1.~2014.12. (2년, 재계약), 서울시장애인체육회
  - 3차 : 2015.1.~2016.12. (2년, 재계약), 서울시장애인체육회
  - 4차 : 2017.1.~2019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장애인체육회
  - 5차 : 2020.1.~2022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장애인체육회
- 민간위탁 재위탁 사전절차 이행여부
  - 2022. 4. :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적정, 조직담당관)
  - 2022. 4. 20. :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  
(행정1부시장 제129호)
  - 2022. 5. 12. :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적정, 조직담당관)

## 라. 주요 위탁내용

- 사업목적
  -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장애인 선수들이 경쟁력을 높여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을 향상시키고,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 필요사항을 지원
- 위탁사무 내용
  -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
  -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
  -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·장비의 관리
  - 시정홍보 및 기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사항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 
「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 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 편성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#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(이하 장애인경기부)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시의회)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-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서울시로부터 수탁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 경기부는 2012년, 2016년에 각각 당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,<sup>1)</sup>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한 재위탁·재계약 시점이므로 재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

---

####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- 제4조<2012.3.29. 시행>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제4조의3<2016.1.7. 시행>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〈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〉

**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**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 
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또한 서울시의 「민간위탁 관리지침」은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<sup>2)</sup>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재계약으로 이어져 온 해당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<sup>3)</sup> 대상임.

〈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경과 〉

구분	수탁기관	수탁기간	누적기간	비고
1차	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	2010.3.~2012.12. (2년 10개월)	2년 10개월	최초
2차	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	2013.1.~2014.12. (2년)	4년 10개월	재계약
3차	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	2015.1.~2016.12. (2년)	6년 10개월	재계약
4차	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	2017.1.~2019.12. (3년)	9년 10개월	재계약
5차	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	2020.1.~2022.12. (3년)	12년 10개월	재계약

2) 「민간위탁 관리지침」(서울시 조직담당관-10999, 2021.10.12.)

〈 민간위탁사무 유형별 재계약 제한 〉

구분	시설형	사무형
위탁기간	·3년 이내(민간위탁조례 제11조) ※ 다른 법령·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	
재계약 제한	·재계약 1회에 한하여 가능 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) ·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	·재계약으로 동일 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,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

3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## 나.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

- 장애인경기부는 2010년 3월부터 휠체어 농구팀 창단을 시작으로 장애인체육회가 12년 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중이며, 2022년 4월 현재 기준 9개 종목 9개 팀이 활동 중임.

### <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세부현황 >

연번	종목	2022년 승인 인원				창단일
		합계	감독	코치	선수	
계		45	8	2	35	
1	휠체어 농구	11	1	1	9	2010.03.04.
2	탁구	6	1	-	5	2012.07.01.
3	휠체어 컬링	7	1	1	5	2016.08.01.
4	골볼	5	1	-	4	2019.02.01.
5	육상	4	1	-	3	2019.04.01.
6	역도	4	1	-	3	2020.10.05.
7	수영	3	1	-	2	2020.10.05.
8	보치아	3	1	-	2	2020.10.05.
9	양궁	2	-	-	2	2020.10.05.

※ 2022.4. 현재 기준 자료이며, 지난 5월 휠체어 농구팀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농구단으로 전원 승계되었고, 6월 중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해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.

※ 보치아 : 패럴림픽 종목의 하나로 휠체어를 타고 동계스포츠인 컬링처럼 표적구에 가까이 위치한 공의 숫자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는 경기임.

- 현재 위탁기간은 2020.1.1.~2022.12.31.(3년)이고,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5.4% 증가한 26억 9천9백만원이며, 운영 대상 팀이 늘어나면서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
### < 최근 5개년 간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금 >

(단위 : 천원)

연도	2018	2019	2020	2021	2022
민간위탁금	1,550,000	1,550,000	2,105,000	2,339,407	2,699,053

- 다만, 휠체어 농구팀은 지난 5월 11명 전원이 민간기업인 코웨이의 휠체어 농구단원으로 채용되면서 현원이 없는 상태이며, 6월 중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해체여부가 결정될 예정임.
- 휠체어 농구팀이 해체될 경우, 현재 정원인 45명을 유지하되 다른 8개 종목, 8개 팀의 인원 보강에 활용하고, 장애인경기부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임.

#### 다.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성과

- 수탁기관인 장애인체육회는 2019년도 이전 3개년 간 예산이 동결되어 우수선수가 유출되는 등 경기력 저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였고, 2020년도 이후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.
- 이에 따라 매년 경기인 평가결과를 반영한 수당 지급, 교통보조비 신설, 타시설을 이용한 전지훈련장 마련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음.
- 당해 위탁기간(2020~2022) 중 장애인경기부의 연도별 대회 출전 성적은 2020년도 금메달 4개, 동메달 1개, 2021년도 금메달 32개, 은메달 29개, 동메달 23개, 2022년도(2월 기준) 금메달 1개를 획득하였으며,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목표달성률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임.
- 종합성과평가 총점은 80.43점으로 재계약 가능 점수인 75점보다 5점 이상 높으며, 최근 3년 간 평균 4인의 사업수행인원 유지, 최근 2년간 98% 예산집행률 달성 등 평가내용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됨.

<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연도별 출전 성적 >

구분	연도	목표	실적	달성률
연도별 출전 성적	2020	26점	33점	126.92%
	2021	54점	129점	238.89%
	2022	5점	15점	300.00%

※ 상기표 작성 기준(종합성과평가 中)

- 측정단위 : [개인] 1위 3점, 2위 2점, 3위 1점 / [단체] 1위 15점, 2위 10점, 3위 5점
- 평가방법 : 연간 대회별 최소 입상 기준으로 최고 획득 메달(1개) 점수 적용

- 또한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중에도 전문 경기인으로서 비대면 영상 제작을 통하여 재능나눔행사를 실시하였고, 경기인 전원이 참가하여 2020년도 7회, 2021년도 32회를 실시한 결과 각각 47명과 318명이 수혜를 받았음.
- 다만 전년 대비 재능나눔행사 수혜자가 대폭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온라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자를 확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수혜자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-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, 예산항목에 의무요원 파견 및 부상 치료에 관한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과 종목별 전용훈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의 개선요청이 있었음.



## 라.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

- 서울시는 해당 민간위탁사무를 ‘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’ 으로 ▲ 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▲ 선수훈련 및 국내외 경기대회 출전 ▲ 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시설 및 장비 관리 ▲ 시정홍보 및 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등을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음.
- ‘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’ 민간위탁사무는 사전절차로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‘적정’ 의견을 받았음.
- 특히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며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.
- 따라서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의 사무기준 및 적정성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
  - 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의 특성과 재위탁을 통해 장기간 수탁을 받은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, 공개 경쟁을 통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 등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.<sup>4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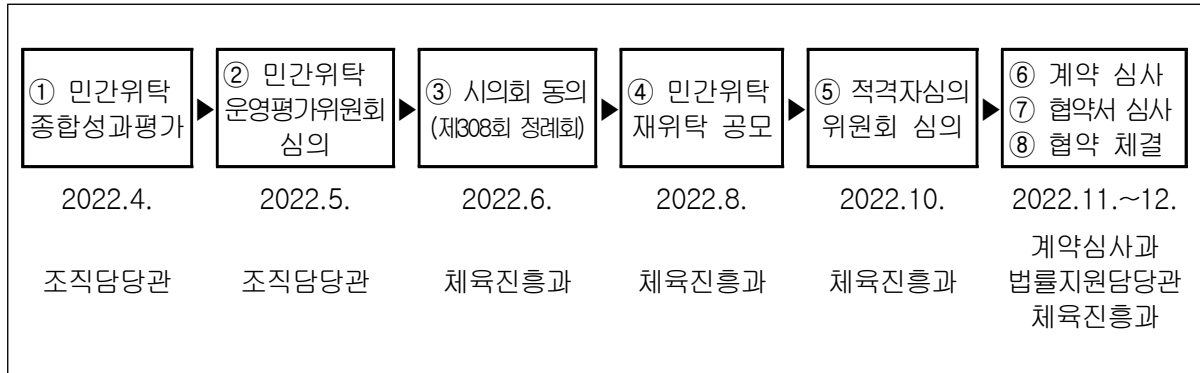
---

4) 「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」(서울시 체육진흥과-21064, 2022.4.20.)

### □ 재위탁 필요성

- 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은 경기인 관리 및 경기력 향상, 국내외 경기대회 출전, 훈련장·생활관 관리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인 전문성 필요
- 재위탁을 통해 장기간 수탁을 받은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공개경쟁으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 필요

## <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절차 >



### 마. 종합의견

- ‘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’ 사무는 12년 간 민간 위탁방식을 통해 운영 전문성을 제고하였고, 지속적으로 신설팀을 창단하면서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음.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선수단의 안전한 훈련 환경을 마련하여 도쿄 패럴림픽 등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.
- 종합성과평가 결과 중 분기별 예·결산 수치 불균형 해소, 적극적인 공익활동 필요 등 일부 개선요청사항이 있기는 하였으나 80.43점이라는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며,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도 ‘적정’ 의견을 받았음.
- 따라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공공 분야에 적절히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됨.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- 장애인 휠체어팀의 사례와 같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로 인해 기업들이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. 더 많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민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람.
-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음.

#### 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6명 , 전원찬성)

#### 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#### 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2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」 지도자 및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,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필요사항 지원을 위해 장애인 전문체육 기관·단체에 위탁하고자 함

나. 이에 ‘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 및 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
- 종 목 : 휠체어농구, 탁구, 휠체어컬링, 골볼, 육상, 역도, 수영, 보치아, 양궁
- 인 원 : 총45명

#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('23.1월 ~ '25.12월)
- 위탁유형 : 사무형
- 위탁방법 : 재위탁(공모)
- 기관선정 :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시 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탁기관 선정

○ 위탁업무

-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
- 경기인 확보 및 선수훈련, 국내·외 경기대회 출전
-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시설·장비 관리
- 시정홍보 및 기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사항

○ 소요예산(안) : 3,100,947천원('23년 기준)

다. 추진근거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
-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, 제9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
-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('22.4.20.)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2010.3.~2012.12. (2년 10개월),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
- 2차 : 2013.1.~2014.12. (2년, 재계약),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
- 3차 : 2015.1.~2016.12. (2년, 재계약),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
- 4차 : 2017.1.~2019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
- 5차 : 2020.1.~2022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

○ 민간위탁 재위탁 사전절차 이행여부

- '22. 4. :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적정, 조직담당관)
- '22. 4. 20. :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  
(행정1부시장 제129호)
- '22. 5. 12. :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적정, 조직담당관)

## 라. 주요 위탁내용

### ○ 사업목적

-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장애인 선수들이 경쟁력을 높여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을 향상시키고,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 필요사항을 지원

### ○ 위탁사무 내용

-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
-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
-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·장비의 관리
- 시정홍보 및 기타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사항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○ 국민체육진흥법

**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**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
#### ○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3조(경기부 설치 등)** ① 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.

**제9조(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...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...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팀 손경이(☎2133-9744)